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WHO 건강도시로서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안전제고를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강한 일터 인증제 정의 신설(안 제2조제5~7호)
-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신설(안 제4조의 2)
 - 건강도시 브랜드사업으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시행
 - 물리적 작업환경영역과 개인건강자원영역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 일터 인증
 -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
- 건강한 일터 인증 심사위원회 신설(안 제7조의 2)
 - 건강한 일터 인증제의 심사·심의와 전문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한 일터 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건강한 일터 인증 기업 대한 지원 신설 (안 제14조의 2)
 - 시장은 인증심사에 사용되는 비용 중 신청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시 우대업체로 선정
- 기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는 WHO 건강도시로 인구 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와 사업장 산업재해 사전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WHO 건강도시 구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건강한 일터 인증제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건강한 일터 인증제를 시행하고, 물리적 작업
환경영역과 개인건강 자원영역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
일터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건강한 일터 인증제의 심사·심의와 전문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한 일터 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 건강한 일터 인증 기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젊은 도시, IT첨단산업 도시인 구미의 이미지에 걸 맞는 건강한 기업 육성을 위하고, 산업재해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라 판단되며,

건강한 일터 나비(Navi) 인증을 활성화시킨다면 구미시 2,675개의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8만4천여명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